

Asian Nursing Research 편집위원회 규정

개정 : 2016년 1월

제 1조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(이하 본법인) 정관 제 26조 1항 에 따라 구성된 ANR편집위원회 (이하 위원회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, 부편집위원장, 그리고 편집위원을 둔다.

제 3조 제 3조 ANR 편집위원장은 한국간호과학회 회장과 차기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, 부편집위원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.

1. ANR 편집위원장 자격조건
 - (1) 한국간호과학회 정회원
 - (2) 국내외 저명학술지 편집위원 경험자
 - (3) 연구출판윤리관련 징계 받은 경험이 없는 자
2. ANR 편집위원 자격조건
 - (1) ANR 심사위원 경험자 우선
 - (2) 국내외 저명 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자
 - (3) 연구출판윤리관련 징계 받은 경험이 없는 자

제 4조 위원회는 ANR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·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실행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.

1.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
 - (1) 편집에 관한 사항
 - (2) 게재료의 결정
 2.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
 - (1) 편집위원 워크숍
 - (2) 편집위원-심사위원 합동 워크숍
 3. Asian Nursing Research의 질 관리
 - (1) 한국연구재단 등재 관리
 - (2) 대한의편협(KoreaMed) 등재 관리
 - (3) PubMed Index Medicus 등재 관리
 - (4) SCI 등재 관리
 4. 관련 규정의 검토에 관한 사항
 5.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
- 제 5조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.

1. (자격)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,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,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지견을 갖춘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(절차) 논문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은 편집위원이나 회원학회장의 추천을 받은 피 추천인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·선정한 다음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.
3. (임기)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4. (특별 심사위원)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.
5.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.
6.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09년 4월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1년 12월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4년 12월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.